소 장

원고(선정당사자) 별지1 선정당사자 목록 기재와 같음

피 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이금로

2.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상대표자 국가주석 시진핑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1 선정당사자목록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2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일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소송의 목적

별지1 선정당사자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2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합니다)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입니다(헌법 제1조 참조). 2017년 3~4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인가능한 범위를 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음을 물론 면역력 저하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어, 내 가족을 지키려는 소박한, 그러나 처절한 마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합니다)은 수천년간 피고 대한민국과 때로는 갈등관계에, 때로는 혈맹으로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원고들은 중국을 적대시하여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상호 노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를 이끌어 갈 두 나라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본 소송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 주장하는 손해는 상징적인 것일 뿐,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아니함을 밝혀둡니다. 이 사건에 참여한 원고들은 모두 승소판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전액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 불법행위

가. 손해의 발생

2017년 3~4월경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정상적인 사람도 견디기 힘든 정도여서 노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컸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17. 3. 21.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179로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좋지 않았습니다[갑 제1호증 기사(연합뉴스) 참조].

원고 안경재는 대한민국 춘천에 거주하는 변호사로, 폐활량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2017. 3. 27. 07:30경 춘천에 있는 봉의산 충렬탑에서 봉의산 9부 능선에 있는 전망대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당시는 안개가 자욱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 후 천식 증세는 계속되어 원고 안경재가 2017. 4. 4. 춘천 소재 의료법인 강남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세는 한 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았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진단서 참조). 몸이 힘들어지자 원고 안경재는 자주 짜증을 내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밖에 원고들의 손해는 별지2 선정자별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3호증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법,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각 논문 참조).

나. 규범 위반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갑 제4호증 기사(JTBC),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각 논문 참조]. 만약 중국의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다고 여겨지면 원고들은 중국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할 예정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중국이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헌법 제10조). 헌법은 단순한 윤리규범이 아니라 국가와 모든 국민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고 법규범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염된 물은 생수를 사먹는 것으로 그나마 회피할 여지가 있지만, 오염된 공기는 선택의 여지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소득 역진적이어서 소득을 올리며 오염물질을 생산해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 손해액

원고들은 미세먼지가 없는 파란 청명한 하늘 아래 야외활동을 맘껏 즐겨 왔으나,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야외활

동을 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스포츠권, 여가권, 신체적 권리가 침해받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0만원을 청구합니다.

3. 피고들에 관하여

지난 봄 대한민국에 미세먼지가 유독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년보다 북서풍이 약하여 미세먼지를 널리 흩트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서풍이 약한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지구온난화는 과도한 탄소배출 탓입니다. 결국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나라에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은 승소판결을 넘어 궁극에는 각국의 협조노력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한 것이어서,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을 피고로 하였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1 선정당사자목록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2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3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사(연합뉴스)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진단서
1. 갑 제3호증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예방법
1. 갑 제4호증	기사(JTBC)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각 논문(중국의 영향 관련)
1. 갑 제6호증의 1, 2	각 논문(미세먼지의 인체에 대한 영향 관련)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2017. 5. 24.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 흥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1

선정당사자 목록

1. 강미선

   서울 용산구

2. 김성훈

   서울 강남구

3. 김용택

   전북 임실군

4. 김홍신

   서울 서초구

5.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89, 3층 (와룡동, 이화회관)

   대표자 이사 이상협

6. 안경재

   춘천시

7. 양길승

   서울 강남구

8. 임옥상

   서울 종로구

9. 최 열

   서울 용산구

10. 최소영

    성남시 분당구